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여행/해외장기체류자

2. 보험상품의 명칭 : 월드와이드해외장기체류보험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보험목적 보장시 해당 개별 특약에 보험의 목적을 명기한다.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기간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
마. 보험 종목의 변경 :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바. 모집의 제한 : 포괄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판매자로 하는 계약에 한해서만 판매한다.
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며, 보험만기는 8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아. 회사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다.
자. 동 보험의 단독실손의료보험은 "KB해외장기체류실손의료비보험"으로 안내한다.
차.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카. 회사는 보험상품의 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를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 할 수 있음.

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파. 실손의료비 관련 사항

1) 회사는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실손의료보험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한다.
2)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보험종목</th><th>보험가입금액 한도</th></tr>
<tr><td rowspan="2">기본형</td><td colspan="3">상해급여실손의료비 보장</td><td>5천만원 이내</td></tr>
<tr><td colspan="3">질병급여실손의료비 보장</td><td>5천만원 이내</td></tr>
<tr><td rowspan="8">특약형</td><td rowspan="5">특약1
(중증 비급여)</td><td colspan="2">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보장</td><td>5천만원 이내</td></tr>
<tr><td colspan="2">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보장</td><td>5천만원 이내</td></tr>
<tr><td rowspan="3">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td><td>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td><td>350만원 이내</td></tr>
<tr><td>주사료</td><td>250만원 이내</td></tr>
<tr><td>자기공명영상진단</td><td>300만원 이내</td></tr>
<tr><td rowspan="3">특약2
(비중증 비급여)</td><td colspan="2">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보장</td><td>1천만원 이내</td></tr>
<tr><td colspan="2">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보장</td><td>1천만원 이내</td></tr>
<tr><td colspan="2">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보장</td><td>200만원 이내</td></tr>
</table>

하. 업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은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부가한다.
(2)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업무 외 사망'과 '업무상 사망'담보를 구분하여 '업무 외 사망' 또는 '업무상 사망'만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할 수 없다.
(3)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사실 및 기업 단체보험의 근로자 사망보험금 관련 판례의 주요내용을 보험가입시 안내한다.